

# 한국체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- 제정 1998. 10. 1. (규칙 제251호)
- 개정 2003. 10. 9. (규칙 제414호)
- 개정 2005. 12. 5. (규칙 제469호)
- 개정 2011. 2.11. (규칙 제547호)
- 개정 2013. 8.26. (규칙 제631호)
- 개정 2015. 1.30. (규칙 제657호)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71조에서 규정한 공개강좌 중 한국체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(이하“본 과정”이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운영방침)**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경영자의 자질을 갖춘 자에게 경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응용기법을 학습케 하여 최고경영자로서의 경영 능력과 지도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.

**제2조의2 (조직)** ① 최고경영자과정에 원장을 두되, 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주임교수는 본교 교원이 겸임하고, 행정업무는 대학원 행정실에서 수행한다.

③ 원장과 주임교수의 보직경비 및 대학원 행정실의 필요경비는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지급한다.

**제2조의3(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)** ①본 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최고경영자과정원장, 대학원장, 사회체육대학원장, 교학처장,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경영자과정원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. 단, 보직과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
2. 세입·세출 예산 및 결산
3.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
4.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(등록금 감면 포함)
5.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주요 사항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3조(모집정원)** 본 과정의 모집정원은 10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4조(개강시기)** 본 과정의 개강 시기는 매년 3월 중으로 한다.

<개정 2015.1.30.>

**제5조(지원자격)** 본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의 체육·스포츠분야의 경영관리자 및 지도자
2.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
3. 직접적인 영업활동의 목적이 예상되는 업종의 종사자는 지양한다.

<신설 2013.8.26>

**제6조(전형)** 본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에 의한다.

**제7조(모집방법)** 본 과정의 모집방법은 총장이 정한다.

**제8조(수강료)** 본 과정에 등록한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수업연한)** 본 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, 수업일수는 24주로 한다. <개정 2015.1.30.>

**제10조(제적)**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제적한다. <신설 2013.8.26>

1. 등록기간 내에 이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3.8.26>
2. 질병,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<신설 2013.8.26>
3. 본 과정에 재학 중 직접적인 영업활동(보험, 사진, 음식점, 여행사, 유흥업 등)을 한 자 <신설 2013.8.26>
4. 본교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자 <신설 2013.8.26>
5. 교육과정 운영 및 원우회 화합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 <신설 2013.8.26>

**제11조(수료)** ①본 과정에 개설된 강좌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한 자에게 수료를 인정한다.

②본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“별지”의 수료증서를 교부한다.

**제12조 삭제**

**제13조(시설물의 이용)** 본 과정 수강자는 수강기간 중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.

**제14조(기타사항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**부 칙 (1998. 10. 1. 제251호)**

제 1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1999년 2월 1일 현재 재학하고 있는 수강자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**부 칙 (1999. 2. 26. 제262호)**

이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03. 10. 9. 제414호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05. 12. 5. 제469호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11. 2.11. 제547호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13. 8.26. 제631호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15. 1.30. 제657호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000 호

## 수료증서

성명 0 0 0  
1900년 00월 00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제00기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증명함.

20 년 00월 00일

한국체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원장 000박사 0 0 0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.

한국체육대학교총장 0 0 0